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6. 2. 10.(화)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86호
- 발 의 일: 2026년 1월 27일
-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2월 3일

2. 제안사유

- 중년기는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이에 중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지역보건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중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년의 건강한 삶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중년층(40~60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은퇴 전·후의 삶 준비와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은 어린이·청소년·노인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중년층은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 특히,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중년기에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는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므로 예방 중심의 건강 지원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중년을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달성군민’으로 정의하여 그간 타 법률 및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년층에 대해 규정하여 본 조례의 입법목적과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의	근거규정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달성군 청년기본조례
중년	40세이상 50세 미만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중년	50세 이상 65세 미만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65세이상	달성군 노인 관련 조례 상 규정

- 안 제3조는 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으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경비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 규정을 두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이 필수이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 정책상의 상대적인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건강 지원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개인·가정·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87호
- 발 의 일: 2026년 1월 27일
- 제 출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2월 3일

2. 제안사유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범위와 그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사용료 징수 범위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농어촌정비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범위와 그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단사용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적용 범위 및 사용료의 징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름으로써 관련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여 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 범위를 상위법령과의 일치되도록 하여 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갖추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은 「농어촌정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에 따라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